[별표 1]<개정 2009.11.13>

교원신규임용 후보자 평가기준

1. 1차심사(학과/전공심사)

평 가 내 용	평 가 항 목	배점비율
전공적합성	1. 전공연계성 가. 응모분야 전공적합성 나. 담당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에 종사(3년이상)하고 있는 현직자(겸임교원) 다. 산업체등에서 당해분야 3년이상 유경험자(초빙교원)<개정 2009.11.13>	30%
	2. 채용전공관련 이수과목 일치 여부	20%
연구실적	1. 연구실적물의 질적수준 (학위논문, 학술지, 논문집(논문지), 저서, 단행본, 작품, 창작(실기포함), 기타 등 최근 4년간 연구실적물 200%이상)	20%
	2. 채용분야 연구실적물 일치 여부	30%
	계	100%

2. 2차심사(교원인사위원회 심사)

평 가 내 용	평 가 항 목	배점비율
지 원 서	1. 인적사항, 자격사항	20%
자기소개서	2. 지원동기 및 임용 후 계획, 기타사항	20%
연구실적물의 양	3. 채용분야와 전공분야의 연구실적물	20%
학력 및 경력사항	4. 성적(학사, 석사, 박사) 및 산업체 기술개발 참여, 프로젝트 수행, 교육프로그램개발, 공모전전시, 출품, 입상 및 기타실적	40%
	계	100%

3. 3차심사(교원채용면접위원회 심사)

평 가 내 용	배점비율
1. 교수로서의 사명감과 직업의식	25%
2.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	30%
3. 발표력(의사표현)	25%
4. 교양 및 품행	20%
계	100%

(평가 시 유의사항)

1. 예·체능계 학과는 연구실적 평가시 학위논문, 연구논문, 발표, 전시, 입선, 해당 분야에서의 활동경력 등을 고려하여 종합 평가함.
2. 학과 심사회의 및 교원인사위원회의에서는 평가영역과 내용 배점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종합 평가한 후 추천순위 및 최종선발자를 결정함.
3. 학과 심사위원은 개별적인 평가표를 작성하고 학과장은 이를 수합하여 기획처에 제출함.
4. 인성평가(면접)시 평가대상 결정과 방법은 정성적 평가방법에 의함.

연구실적물 및 교원 경력 환산 기준

제5장 연구실적물

제25조(연구실적물의 범위) ① 연구실적심사대상은 본인이 제출하는 논문, 저서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업적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실적이 있어야 한다.

1. 신규임용의 경우에는 최근 4년 이내 200% 이상의 연구실적이 있어야 한다.
2. 재계약, 재임용 및 승진의 경우 연구실적량은 계약제교원 임용에 관한 내규, 교원재임용 및 승진임용심사내규에 의하며, 연구실적이 연구발표, 전시 등인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00.1.25>, <개정 2009.3.1>

② 논문은 대학 또는 교수자격을 인정받은 전공분야에 관한 것으로서 형식과 내용이 논문의 체계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.

③ 연구실적물은 다음과 같이 발표된 것이어야 하며, 일간지 및 교내신문에 발표된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.

1. 저서 (출판물에 한함)
2. 학회지
3. 논문집 (교내 논문 및 타대학 게재논문)
4. 정기간행물 (학술지로 공인받은 것에 한함)
5. 예·체능계에 있어서는 창작, 발표, 전시, 입상 등을 말한다.

제26조(연구실적물의 인정) ① 저서중 저자의 이론을 정리 체계화한 저서만 연구실적물로 인정한다.

② 중·고등학교의 교과용 도서는 인정하되 강의용 자료와 참고서 등은 연구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.

③ 전문대학 교재로서 새로이 편찬 정리한 교재는 연구실적으로 인정한다.

④ 예·체능계 전공은 총장이 인정하는 실적조서와 증빙자료로서 대체할 수 있다.<개정 2009.11.13>

⑤ 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은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, 1회에 한하여 연구실적으로 인정하되, 신규임용의 경우는 임용전에 취득한 학위논문, 재임용 및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현직급에서 취득한 학위논문에 한한다.<개정 2021.5.26>

⑥ 학술진흥법등 관련 규정에 의거 연구한 연구보고서도 논문으로 인정한다.

⑦ 아래 각 호는 연구자의 전공분야와 다르더라도 승진임용, 재임용(정년보장임용 포함, 신규임용시는 제외)시에는 연구실적으로 인정한다.<개정 2015.8.19, 2021.5.26>

1. 학과 및 대학교육에 관한 연구<개정 2011.2.23>
2. 직업교육 개선에 관한 연구
3. 산학협동(산업체 현장문제, 학생 현장실습 등)에 관한 연구
4. 학생생활지도 및 취업지도에 관한 연구

5. 산업체에서 2개월 이상 현장연수 후 작성한 연구결과보고서는 100%인정
6. 교원연구기관 또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연수에서 10주이상의 연수를 마치고 작성한 연구결과보고서는 100%인정
7. 대학발전을 위한 보고서는 교내 연구과제비로 연구하여 작성한 보고서만 인정한다.<신설 2015.8.19>

제27조(연구실적심사) ① 삭제 <2005.5.21>
② 연구실적은 해당전공분야의 3인 이상이 실시하되 심사대상자의 직위이상의 자로 위촉하고 그중 1인 이상은 타 대학에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.<개정 2001.2.21>, <개정 2005.5.21>
③ 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 및 전국규모학회지(학회지로 공인받은 것에 한함)에 게재된 논문은 심사를 생략한다.<개정 2001.2.21>
④ 연구실적물의 인정 환산율은 다음과 같다.
1. 공통<개정 1998.12.4>
가. 1인 연구 또는 편찬 : 100%인정
나. 2인 공동연구 또는 편찬 : 70%인정
다. 3인 공동연구 또는 편찬 : 50%인정
라. 4인이상 공동연구 또는 편찬 : 30%인정
마. 석사학위 취득 논문 : 100%인정
바. 박사학위 취득 논문 : 200%인정
단,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논문은 2인(지도교수 포함)공동명의로 발표한 경우 에는 학위취득자 단독논문으로 간주한다.
2. 신규채용<개정 1998.12.4>, <개정 2012.9.18>
가. 신규 임용에 있어서의 연구실적은 최근 4년 이내 200%이상(박사학위 취득 논문인 경우 1편 이상)의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조교수 임용의 경우 1편(100%)의 연구실적이 부족할 때에는 1년이내에 제출하겠다는 서약서로 유예할 수 있다.
나. 담당과목과 관련된 현장 프로그램 또는 산업체 프로젝트 참여, 특허취득을 연구실적물로 인정하며 인정내용은 다음과 같다.

인정내용	기간	상한인정률
① 현장참여 · 현장프로그램참여 · 산업체 프로젝트 참여	1개월이상 1건	100% 단독100% 2인 70% 3인 50% 4인이상 30%
② 특허취득 · 발명 · 실용신안	국제1건 국내1건 1건	200% 100% 100%

3. 승진임용<개정 1998.12.4>
당해 직명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된 현장 프로그램 또는 산업체 프로젝트 참여, 특

허취득, 상위자격 취득, 학회등 공인된 연수, 산업체 현장연수 및 연구학기제 참여를 연구실적물로 인정하며 인정내용은 다음과 같다

인정내용	기간	상한인정률
① 현장참여 · 현장프로그램 참여 · 산업체 프로젝트 참여	1개월이상 1건	100% 단독100% 2인 70% 3인 50% 4인 이상 30%
② 특허취득 · 발명 · 실용신안	국제1건 국내1건 1건	200% 100% 100%
③ 상위자격취득(기술사 이상)	1건	100%
④ 연수 · 교육부 · 학회 등의 공인된 연수	소정의 기간 (120시간이상 실무내용 비율이 60%이상)	100%
⑤ 산업체 현장연수, 연구학기제 참여	소정의 기간(6개월 이상)	100%

⑤ 연구실적 인정은 평점이 각각 "우(B)이상이어야 한다.

⑥ 예·체능계 실기(연기, 발표, 전시, 창작, 입상 등)에 대한 연구실적 심사기준은 연구실적인정기준[별표3]에 의한다.<개정 1998.12.4>, <개정 2001.2.21>, <개정 2005.5.21>

⑦ 신규임용자의 연구실적물 예외인정 및 기타 이 규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을 따른다.<개정 2001.2.21>, <개정 2005.5.21.>

[별표 2]<개정 2020.8.21>

교원 경력년수 환산표

1. 교육경력

경 력 종 별	환산비율	비 고
1. 대학의 전임교원 (전문대학, 국방대학원, 사관학교의 교수직 포함)	재직년수의 100% 인정	
2. 대학의 시간강사	재직년수의 50% 인정	단, 주당 5시간 이하는 30%, 주당 5시간 초과시에는 시간당 10%를 가산하되 50%를 넘지 못한다.
3. 중·고등학교 교원 교육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부합되는 경우	재직년수의 50% 인정	
4.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 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우	재직년수의 50% 인정	
5. 초등학교, 유치원 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	재직년수의 50% 인정	
6. 대학의 총(학)장의 발령에 의하여 조교로 근무한 경력	재직년수의 70% 인정	
7. 공인된 체육단체 및 각 대학의 체육코치	재직년수의 50% 인정	

2. 연구경력

경 력 종 별	환 산 비 율	비 고
1. 최종학위취득자 가. 석사학위과정 이수자가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나. 박사학위과정 이수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	석사과정 재학년수의100% 석·박사과정 재학년수의100%	단, 2년을 초과할 수 없다. 단, 석·박사과정을포함하되, 석·박사과정을 합산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2. 최종학위과정 수료자 가. 석사과정 수료자로서 석사학위를 미취득한 경우 나. 박사과정 수료자로서 박사학위를 미취득한 경우	석사과정 재학년수의70% 박사과정 재학년수의70%	단, 2년을 초과할 수 없다. 단, 석·박사과정을포함하되, 석·박사과정을 합산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3.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술연구(실험·실습 포함)를 전문대학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학교에서 행한 경력	경력년수의100%	
4. 국·공립 연구기관 및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 종사한 경력	재직년수의100%	
5. 대학(전문대학 포함)전공분야를 국가기관(시설 및 군경력 포함) 에서 당해 전문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	경력년수의 70%	
6. 대학(전문대학 포함)전공분야의 기술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	경력년수의 70%	
7. 대학(전문대학 포함)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(국영기업체, 공공단체)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	경력년수의 70%	
8. 공과계 대학 졸업자, 상과대학 졸업자 및 신문학과 졸업자로서 동일 분야의 민간산업체(금융기관, 언론기관 포함)에 근무한 경력	경력년수의 70%	
9. 의사, 판사, 검사, 변호사, 공인중개사, 세무사, 변리사 등의 자격증 소지자의 경력기간	경력년수의100%	
10. 목사로서의 재직 경력	경력년수의 70%	
11. 외국공관 근무 경력	경력년수의 70%	